

EDCF 사업의 이해와 해외시장진출 추진방향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Korea's Main Foreign Aid Facility*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017. 9. 12.



차 례

I.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ODA 지원현황

II. EDCF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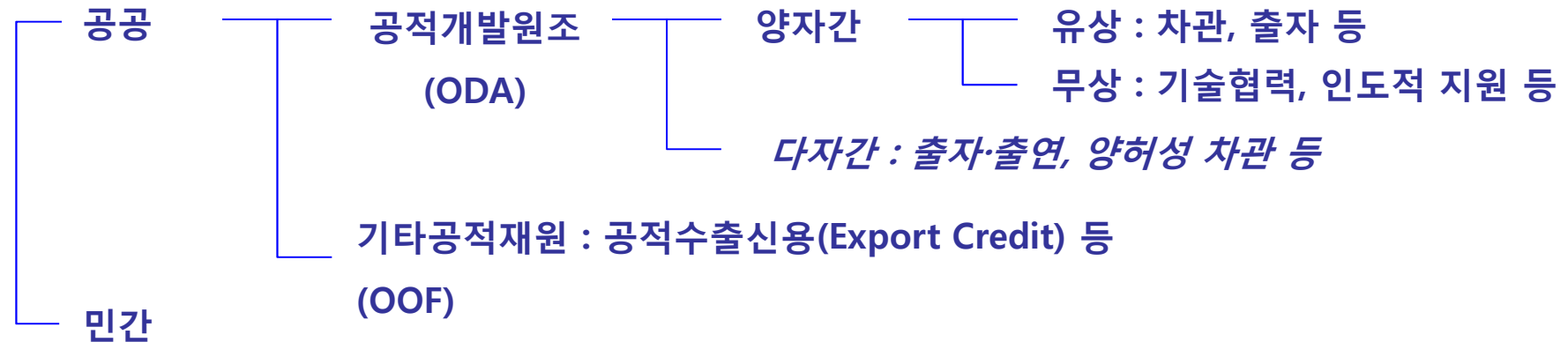
III. EDCF 사업 추진 절차

IV. EDCF 인프라 분야 지원방향 및 사례



공적개발원조(ODA)의 정의

- 196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공공자금 흐름(Official Flows)을 ODA와 OOF(Other Official Flows) 등으로 분류하면서 ODA 개념을 최초로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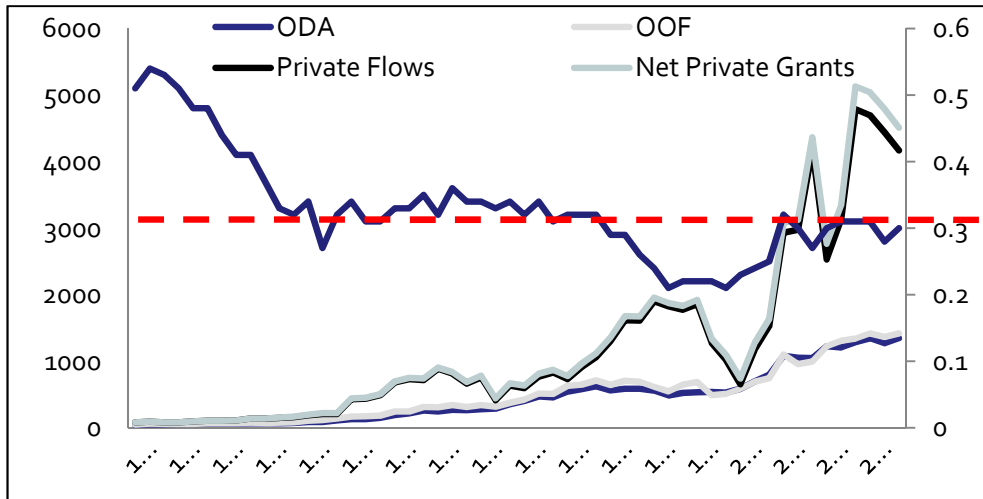
- ODA** : 중앙 또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그 집행기관이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양허적 자금흐름을 지칭한다.
- OOF** : ODA에 속하지 않는 공적수출신용 등 기타 공공자금

충족조건	
공여주체	원조 공여국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공여대상	OECD DAC 지정 적격 개도국 및 국제기구(List 발표)
공여목적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
공여조건	상업자금보다 유리한 양허적 조건 (Grant Element 25% 이상)

DAC 회원국의 ODA 지원 현황

DAC 회원국의 개도국 앞 재원흐름

(억불)



DAC 회원국의 ODA 지원순위('16년, 순지출)

국가		ODA 규모		ODA/GNI	
		순위	백만불	순위	%
미	국	1	33,589	24	0.18
독	일	2	24,670	6	0.70
영	국	3	18,013	6	0.70
:	:	:	:	:	:
한	국	16	1,965	29	0.14

(자료 : OECD STAT)

■ 과거 40년 동안 DAC회원국의

ODA/GNI 비율은 0.3% 내외에서 정체

■ 최근 5년('11-'16년) ODA규모 증가율

- DAC 평균 0.5 % VS 한국 10.2 %

선진 공여국의 원조 목적과 유형

■ 현대원조의 시작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마셜플랜으로 전후 경제 재건 위해 16개국
133억불 전후 복구자금으로 지원

■ 원조의 목적 :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 외교, 안보 목적 등 자국 이해 반영한 다양한
목적으로 원조 지원 中

목 적		경제협력	외교적 국익	패권/안보	혼합형 (영연방국가)
국가		독일, 일본, 프랑스	북유럽 국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호주, 캐나다
지원방식		유상원조, 개발금융 활용	무상원조	무상원조(미국) 유상원조(중국)	무상원조
수원국		중소득국 중심 (중국, 인도, 터키 등)	최빈국 중심	분쟁국(이라크 등) 자원부국(아프리카)	구식민지, 지역 내 영향력, 경제협력관계 등 고려
체제	정책	외교부+ 경제부처	외교부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등	독립된 개발부처
	시행	금융협력 + 기술협력	외교부 통합 or 기술협력 기관		

[참고] 개도국 성장 잠재력과 경험 필요성

◆ 개도국의 세계경제 비중 증가에 따라 신흥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개도국에 대한 시장확보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

* 세계 GDP 중 개도국 비중(%) : ('90) 38 → ('10) 50 → ('30^e) 57

** 우리나라 수출 중 개도국 비중(%) : ('90) 30 → ('00) 45 → ('11) 73

◆ 개도국 인프라 수요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지속 확대 예정

* ADB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인프라 개발수요가 2030년까지 22조 6천억불에 달할 것으로 추산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인프라 건설을 위한 발주 사업이 크게 증가 교통, 통신, 전력, 수자원 등 개도국 인프라 시장 진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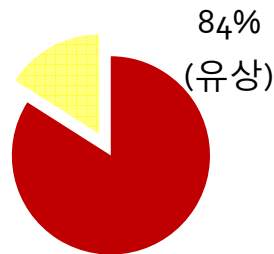
긴밀한 경제협력을 통해 개도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수 원 국

■ 총 수원규모 약 440억불('45~'99)

- 공공차관: 310억불 16%
- 유·무상 ODA: 130억불 (무상)



■ 효과적인 원조 활용

- 유상 : 경제 · 사회 인프라 구축
경제인프라(50%), 제조·농수산업(24%) : **성장기반확충, 고용개발**
- 무상 : 식량 · 원자재 개발 등
식량, 원자재 등(77%) : **사회개발**

■ 1인당 국민소득 300배 증가

- (1962) US\$ 82 → (2016) US\$ 25,458

공 여 국

■ 1987: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설립

■ 1991: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설립

■ 2010: OECD DAC 가입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2000년 OECD 수원국 리스트에서 제외

차 례

- I.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ODA 지원현황
- II. EDCF의 이해
- III. EDCF 사업 추진 절차
- IV. EDCF 인프라 분야 지원방향 및 사례



2010년 DAC 가입 이후 우리나라 ODA 거버넌스

법·정책적 체계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시행령
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2010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1-2015)

정책 수립 및 집행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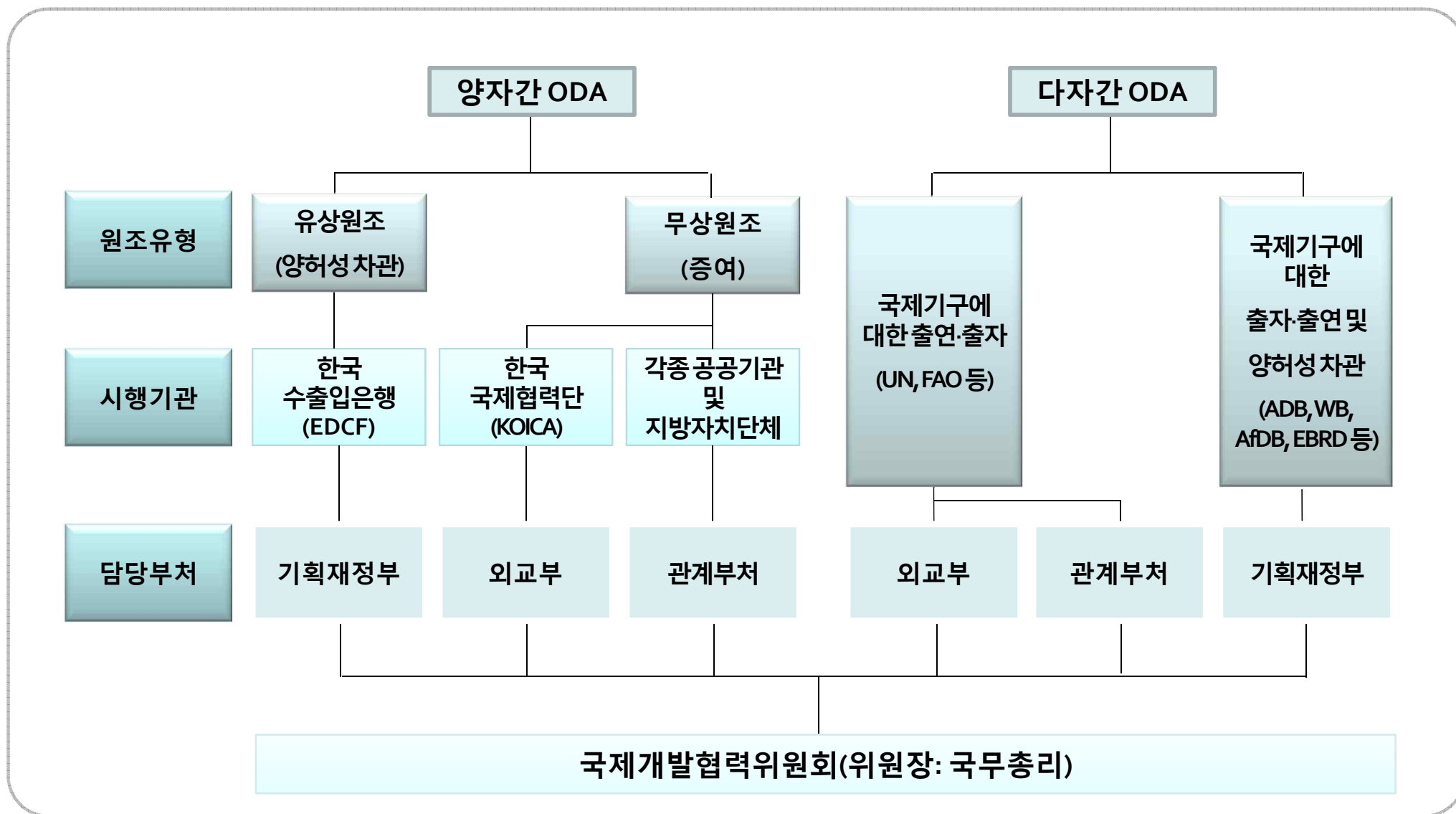
기획재정부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EDCF)

외교부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우리나라 ODA 운영체계



EDCF 개요 및 포트폴리오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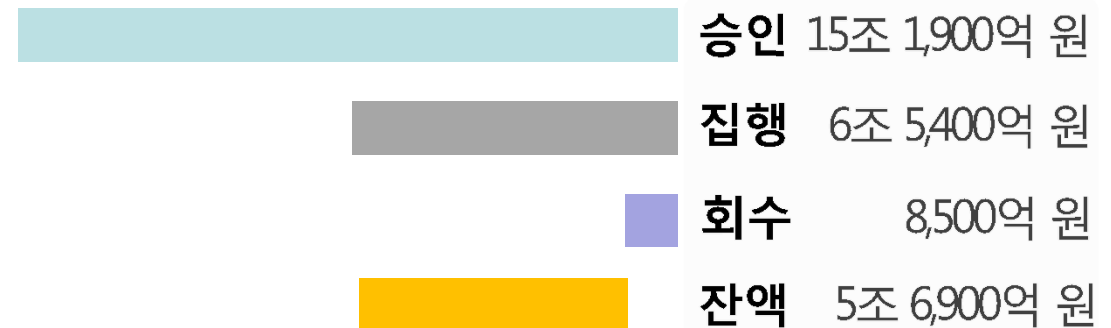
개도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한국과의 경제교류 증진을 위해 설치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 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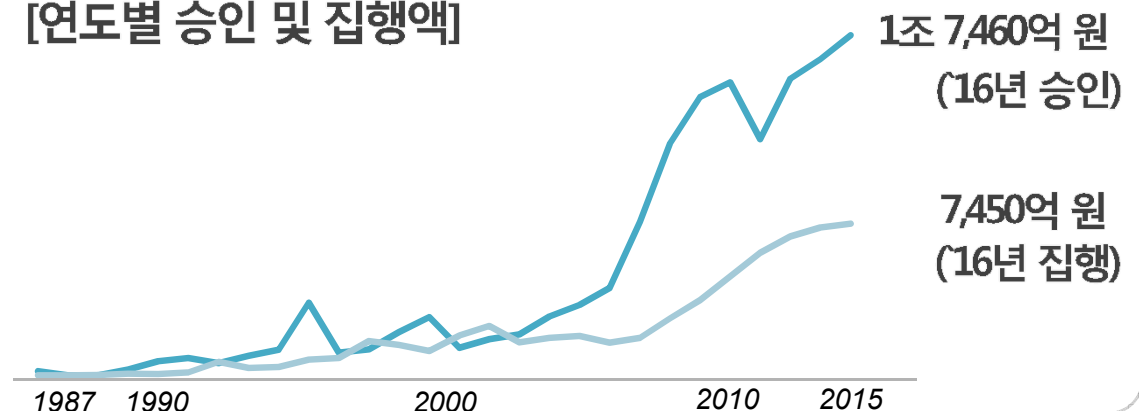
- [출범] 1987년
- [주관/ 운용] 기획재정부 / 한국수출입은행
- [목적] 경제 및 사회 인프라 건설을 통하여 개도국의 빈곤감축 및 경제성장에 기여

주요 실적

[기금운용실적] (16년 말, 누적 기준)



[연도별 승인 및 집행액]



* '16년 말 현재, 총 53개국 375개 사업 지원(승인)

EDCF 운용 기본원칙

EDCF 지원규모는 타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고,
우리 경제여건에 비추어 볼 때 기금의 획기적 확대는 어려운 실정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 필요

개도국의 지속가능 성장기반 마련

- 경제개발계획상 우선순위
- 경제개발효과 및 복리증진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 우리나라와의 교역 확대

1 선택과 집중 전략

- 사전 자원배분계획 수립
 - 중점협력국 지원역량 집중
 - 중점지원분야 집중

2 지원 패키지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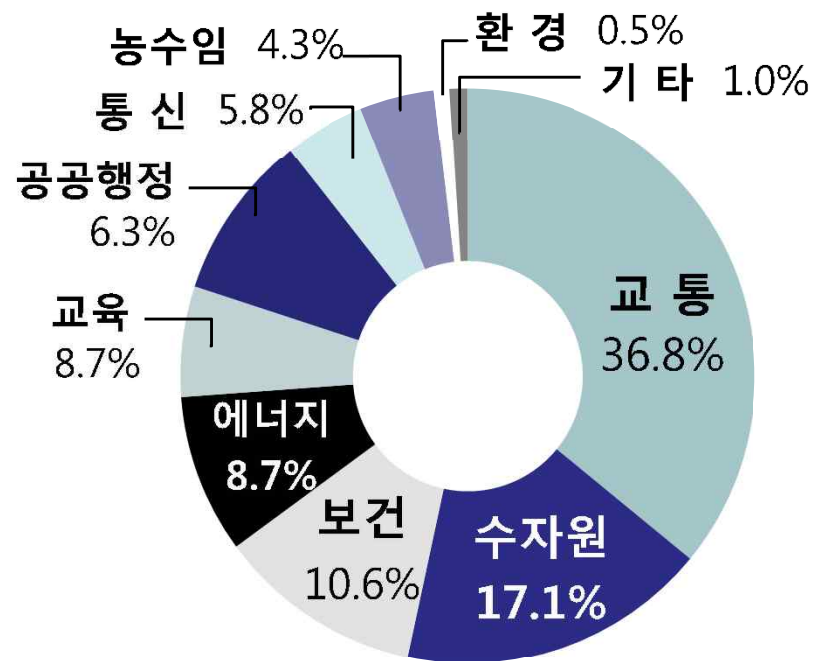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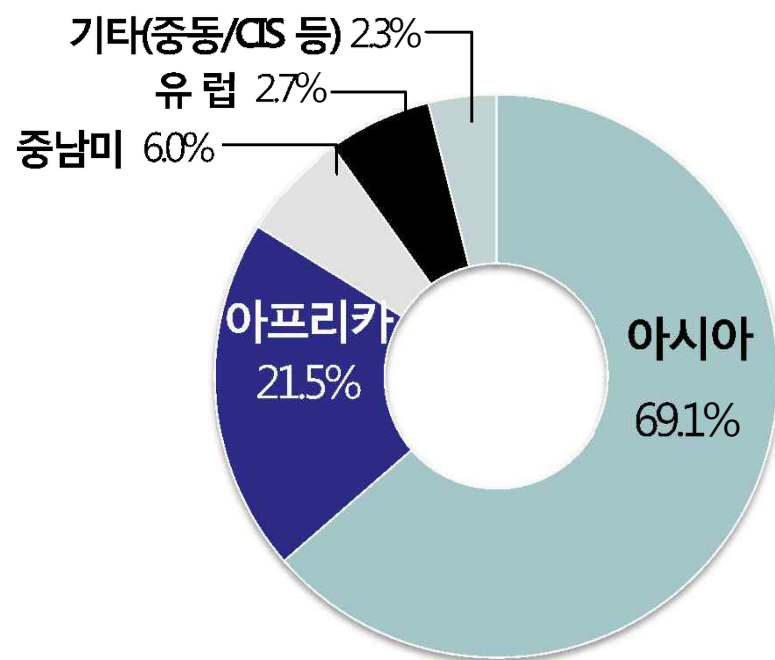
- 다양한 지원패키지 설계
- 지역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
- 섹터개발 특화 지원계획 수립

3 함께하는 ODA

-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 범국민 이해와 참여 증진
- 국제사회와의 협력강화

지역 및 분야별 실적

지역·분야별 EDCF 지원실적 (17년 5월말 누적, 승인)



국가별 실적

국가별 EDCF 지원실적 (17년 5월 누적, 승인기준)

국가	순위	사업건수 및 승인액 누계		
		건수	승인액(백만원)	비율
베트남	1	64	2,848,355	19.2%
방글라데시	2	23	1,260,155	8.5%
스리랑카	3	28	880,264	5.9%
캄보디아	4	21	850,205	5.7%
필리핀	5	18	843,670	5.7%
인도네시아	6	19	642,882	4.3%
미얀마	7	12	642,738	4.3%
탄자니아	8	12	608,097	4.1%
우즈베키스탄	9	11	573,614	3.9%
라오스	10	14	536,623	3.6%
모잠비크	11	12	494,292	3.3%
니카라과	12	12	419,753	2.8%
파키스탄	13	8	417,773	2.8%
에티오피아	14	3	348,534	2.3%
요르단	15	9	271,960	1.8%
앙골라	16	7	253,118	1.7%

EDCF 중점협력국가 및 중점지원사업

중점협력국가

원조수요가 크고, 우리나라와의
경제/외교적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

OECD 지정 수원국 (146개국)

EDCF 지원대상국 (72개국)

제2차 ODA기본계획 중점협력국 (24개국)

EDCF 중점협력국 (21개국)

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아프리카	모잠비크 등
중남미	볼리비아 등
기타	우즈베키스탄 등

중점지원사업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증진 및
우리기업 시장개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분야

녹색성장 관련 사업,
농업관련 사업 및
경제 및 사회인프라 사업

중점지원분야 (4개 분야)

교통
인프라

철도
지하철
공항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송배전

정보통신(CT)
서비스

전자정부
ITS
보건 교육

지역
종합개발

농촌종합개발
도시개발

2017년도 연간 ODA 종합시행계획

- ❖ 2017년 ODA 예산 : 총 27,286억원
- ❖ 양자간 유상(EDCF) 9,545억원, 양자간 무상 13,385억원, 다자간 ODA : 4,729억원

구 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CIS	중남미	기타
규모(억원)	8,448(37.5%)	3,951(17.5%)	1,834(8.1%)	1,355(6.0%)	6,850(30.4%)

< 양자간 사업 규모 >

- 양자간 유상(EDCF): 신규 사업승인 1조 7천억원, 자금집행 9,545억원 달성 추진
- 양자간 무상 : 자금집행 1조 3,385억원 추진 (총 42개 기관, 74개국 1,101개 사업)

< 우리나라의 ODA 지원목표 >

- (20년) ODA/GNI 0.20% 달성 (순지출, 인정액 기준)
- (30년) ODA/GNI 0.30% 목표

	2016	2017	2018	2019	2020
ODA/GNI	0.15%	0.16%	0.17%	0.18%	0.20%

EDCF 차관 종류 및 지원조건

EDCF 차관 종류

개도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차관

- 개발사업차관 (Development Project Loan)
- 기자재차관 (Equipment Loan)
- 민자사업차관 (PPP Loan)
- 민간협력차관 (Private Sector Loan)
- 민간협력 전대차관 (Private Sector Two Step Loan)
- 프로그램차관 (Program Loan)

EDCF 차관의 금융 조건

용자한도	총 사업비 범위 내
이자율	연 0.01%~2.5% (5개 그룹)
상환기간	최장 40년 이내
거치기간	최장 15년 이내
원금상환	연 2회 정기분할상환
이자징수	매 6개월 후취
담보	중앙정부(중앙은행)의 지급보증
표시통화	대한민국 원화 (예외적으로 달러 가능)

개도국앞 EDCF 협력 현황

● 국제금융기구 협조용자 MOU 체결현황

	ADB	AfDB	WB	IDB
일시	'15. 5.26	'15. 5.28	'15. 4.15	'15. 3.28
기간	2015-2018	2014-2018	2015-2019	2015-2017
금액(백만USD)	600	600	300	100

1994-2015	ADB	AfDB	WB	IDB	소계
협조용자 사업 수	18	5	7	7	37
EDCF 승인액(백만USD)	933	183	251	176	1,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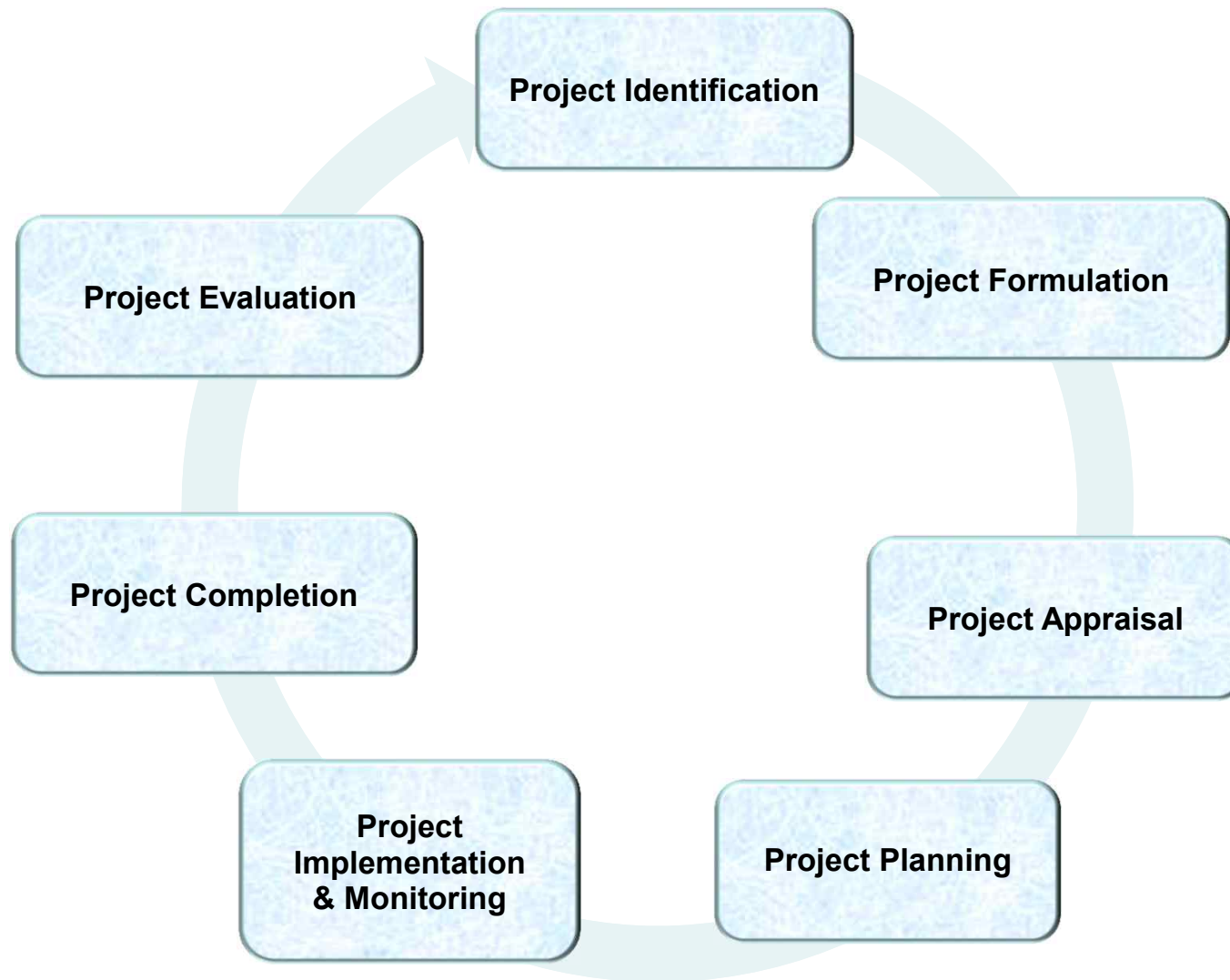
● EDCF 포괄약정 Framework Agreement(2011~2019) 체결현황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CIS
Year	7개국	3개국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금액(억불)	18.1	8.1	2.5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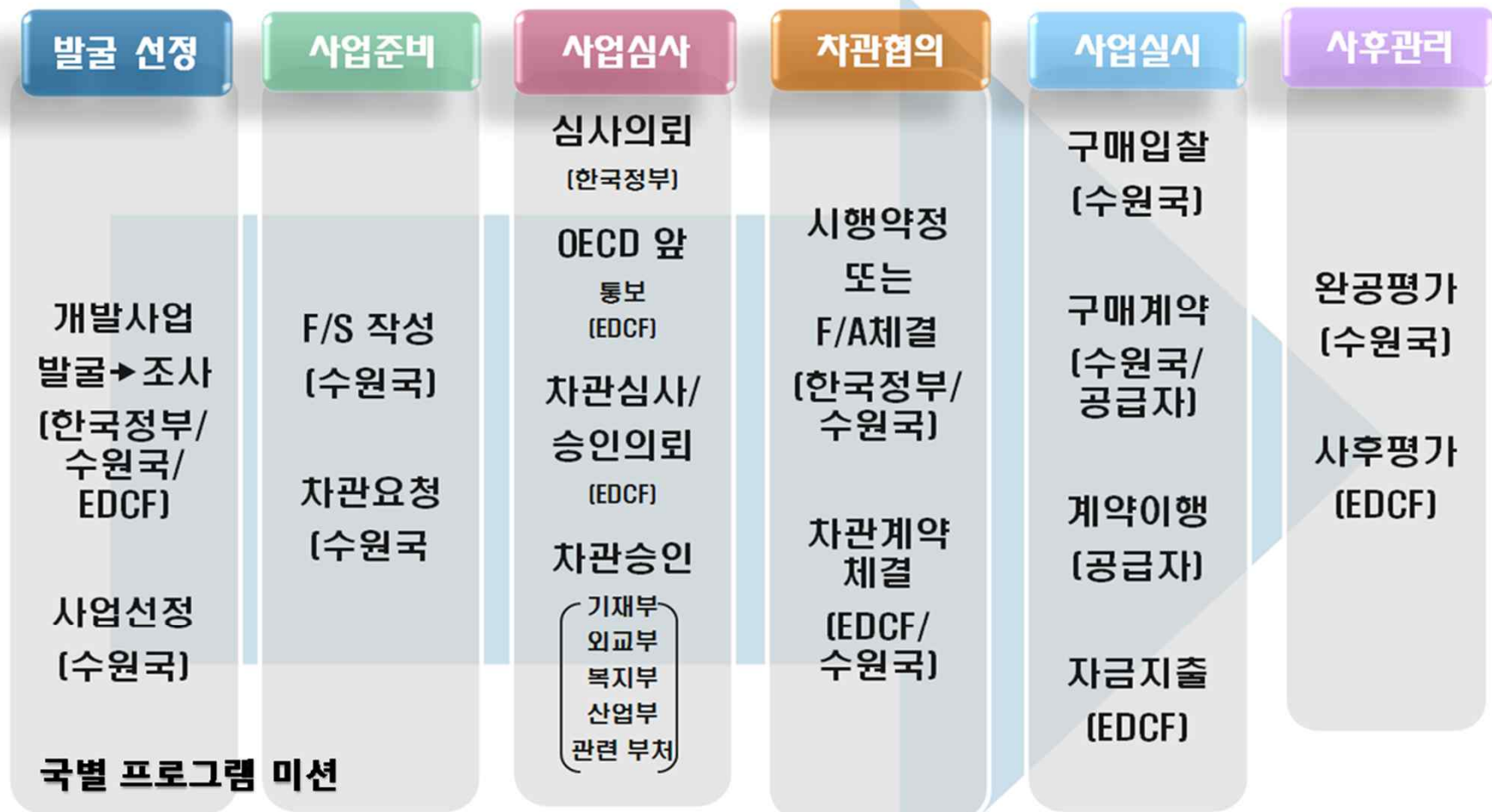
- I.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ODA 지원현황
- II. EDCF의 이해
- III. EDCF 사업 추진 절차
- IV. EDCF 인프라 분야 지원방향 및 사례



EDCF 사업 추진 절차(프로젝트 사이클)



EDCF 사업 추진 절차(2)



1. EDCF 사업발굴(개요)

ODA 기본계획, ODA 국가협력 전략 (CPS)

- 유무상 중점분야 선정 및 전체 자원배분 확정



사업운용계획(중기) 수립 *지역별 및 국별 계획 포함
EDCF 중점분야 선정 및 국별 자원배분 확정



① 국가협력 전략 (매 5년 관계부처 합동)

유무상 중점분야 선정
전체 자원배분

② 프로그램 미션 (n-3년 ~ n-2년중, 수은)

지원분야 및 후보사업
협의를 통한
국별 사업계획 수립

③ 국별 사업계획

중기 후보사업
지원계획 수립

④ 정책 협의 (n-2년중, 수은)

국별 사업계획
확정

○ 정부간 정책협의(Policy Dialogue)

: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계획 및 기금 지원방향 등에
관하여 협의하며, 정책협의를

향후 3년 정도의 기간 중에 지원이 가능한
후보사업군(Rolling Plan)을 선정

○ 지원대상 사업발굴시,

- 지원대상국가 해당여부, 차관조건 수용, EDCF 구매기준
준수, 상업성을 screen 하고,

- 사업내용(중점분야, 사업규모, 지역, 실시기간), F/S 준비상태,
수원국의 재무상태,

국가현황(사업실시능력, 사업실시기관능력, 유사사업 수행경험)
등을 검토

1. EDCF 사업발굴(국별 프로그래밍)

◆ 목적

- ❖ 중기 관점의 전략적 사업발굴 및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사업운영 체계의 확립
- ❖ 정책협약에 앞서, 개도국 정부부처·기관 등과의 현지협의를 통해 국별사업계획(안) 수립

◆ 기본 원칙

- 국별협력전략(CPS) 및 기타 국별 전략·계획을 토대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사업발굴 추진
- 아국기업 진출을 위한 전략사업과 수원국의 요청사업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후보사업에 균형있게 반영
- 수원국 정부가 제시한 후보사업만이 아닌, 외자도입 추진사업(PPP사업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협의
- 사업추진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무부처·기관의 담당 책임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직접 협의

2. 사업타당성 조사(F/S)

□ 지원대상 사업으로 발굴된 사업을 바탕으로 **사업타당성조사(F/S: Feasibility Study)**를 실시

○ **사업타당성조사에 포함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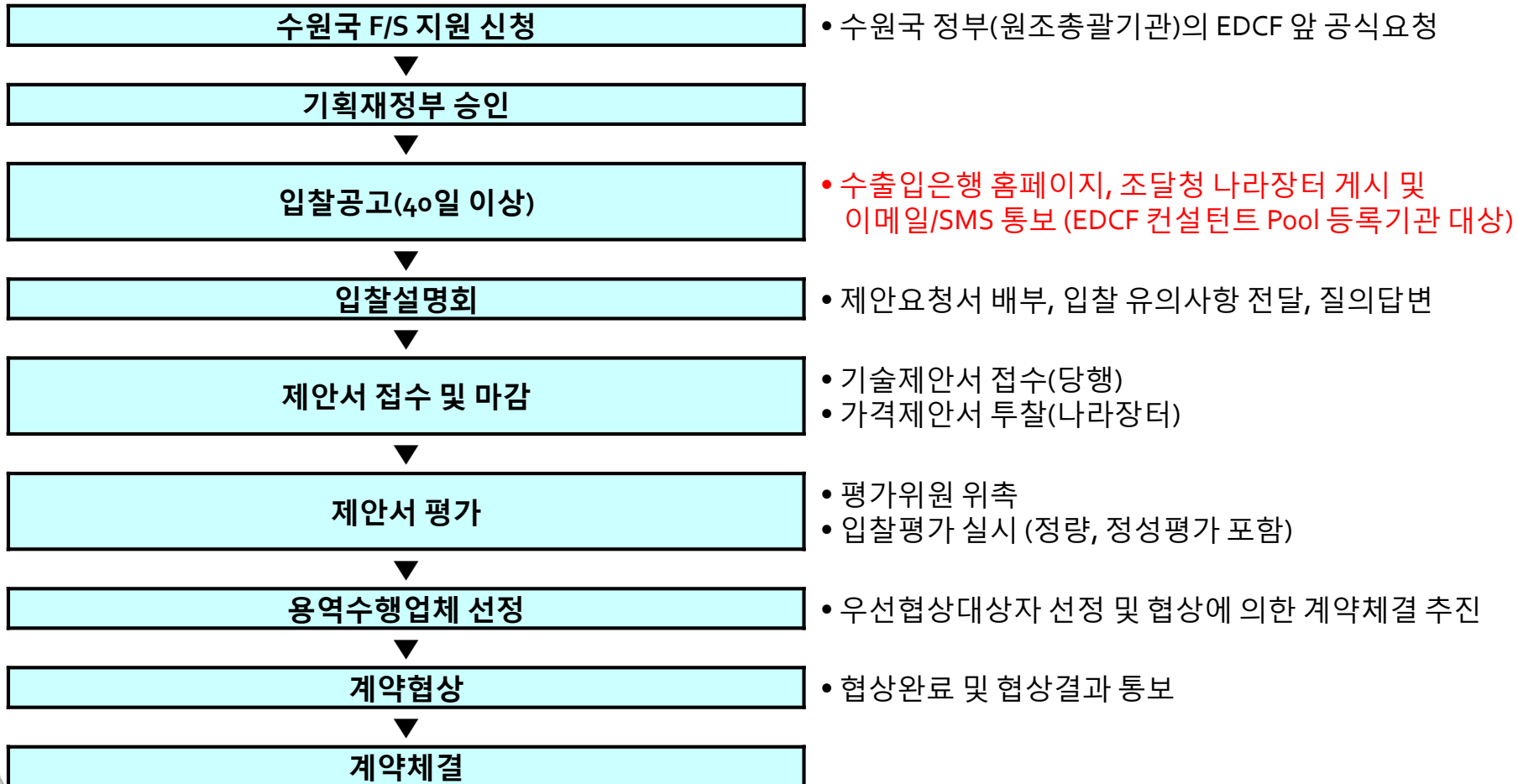
- ✓ 차주(수원국)의 정책 우선순위 및 관련계획
- ✓ 차관요청사업의 개요(목적, 범위, 일정, 사업비, 자금조달 계획 등)
- ✓ 차관요청사업의 기술적/재무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
- ✓ 환경영향평가(필요시) (저감방안 및 필요조치)

□ F/S는 통상 수원국 자체자금으로 실시하나 수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EDCF 차관지원비로 지원(무상)할 수 있으며, KOICA 무상원조 등을 활용하기도 함

- EDCF 차관지원비로 F/S를 지원하는 경우, 수은 컨설턴트 Pool에 등록된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선정된 컨설턴트가 정해진 사업예산과 사업수행기간 내에 F/S 실시
- EDCF-KOICA간 정례협의회를 통해 유무상 연계사업 발굴 (EDCF: 본사업 유상지원, KOICA: F/S 무상지원)

2. 사업타당성 조사(F/S)

- 한국수출입은행이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공(경쟁) 입찰 실시**
- **당행 홈페이지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하며, 발주 후보사업 공개 (www.edcfkorea.go.kr)**



3. 수원국 정부의 EDCF 차관 신청

※ 사전에 EDCF와 협의된 사업에 대해 차관 신청



※ 차주가 EDCF 앞 바로 차관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외공관을 거치게 됨

4. EDCF의 사업 심사



5. 정부간 협정 체결

□ 외교부 장관이 지원방침(Pledge)를 수원국 정부에 통보

☞ 수원국 정부가 수락하면 정부간 협정 또는 시행약정을 체결

* **정부간 협정** : EDCF 지원절차와 관련하여 정부간 협정은 수원국 정부와 아국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공여에 관한 정부간 합의이며, 양국 정부간 합의라는 점에서 조약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짐

① Agreement(정부간 기본협정; A/G)

: 기본협정에는 EDCF 차관을 공여할 것과 일반적인 차관의 원칙(정부보증, 해상운송보험 관련 공정 경쟁 보장, 사업관련 한국민에 대한 편의제공, 이자수입에 대한 비과세 등)이 포함

② Arrangement(정부간 시행약정서; A/R)

: 시행약정에는 개별사업별로 구체적 지원내용을 포함

③ Framework Arrangement(기본약정; F/A)

: 향후 3~5년간 수원국에 대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 등이 포함되며 개별사업에 대한 시행약정을 생략

(‘16.6월말 현재,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캄보디아, 스리랑카, 라오스, 몽골, 에티오피아,²⁸ 탄자니아, 모잠비크, 가나,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등과 체결)

6. 차관공여계약 체결

□ 수은과 차주(수원국 정부)간 차관공여계약서(Loan Agreement; L/A) 체결

○ L/A의 구성

: 차관금액, 용도,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조건, 기타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문과 일반조건, 구매기준, 컨설턴트 고용기준 및 자금지출절차의 붙임으로 구성

○ L/A 체결 절차

- L/A 초안 작성
- L/A 초안 차주 앞 송부 및 협의
- 정부방침 결정 후 즉시 A/G 또는 A/R과 동시에 차주 앞 초안 송부
- 차주측으로부터 수정(안) 접수 및 검토
- 차주측의 수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 합의
- L/A(안) 확정
- L/A 체결 (교차서명 또는 직접대면서명)

7. 컨설턴트 고용계약 체결

◆ 컨설턴트 주요 과업

EDCF 지원사업의 상세설계, 입찰서류 작성 등 입찰지원, 사업진행 관리, 감리 등

◆ 컨설턴트 고용 주체

개도국 정부(사업실시기관) 책임하에 고용

(단 입찰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요 서류에 대한 EDCF 동의/승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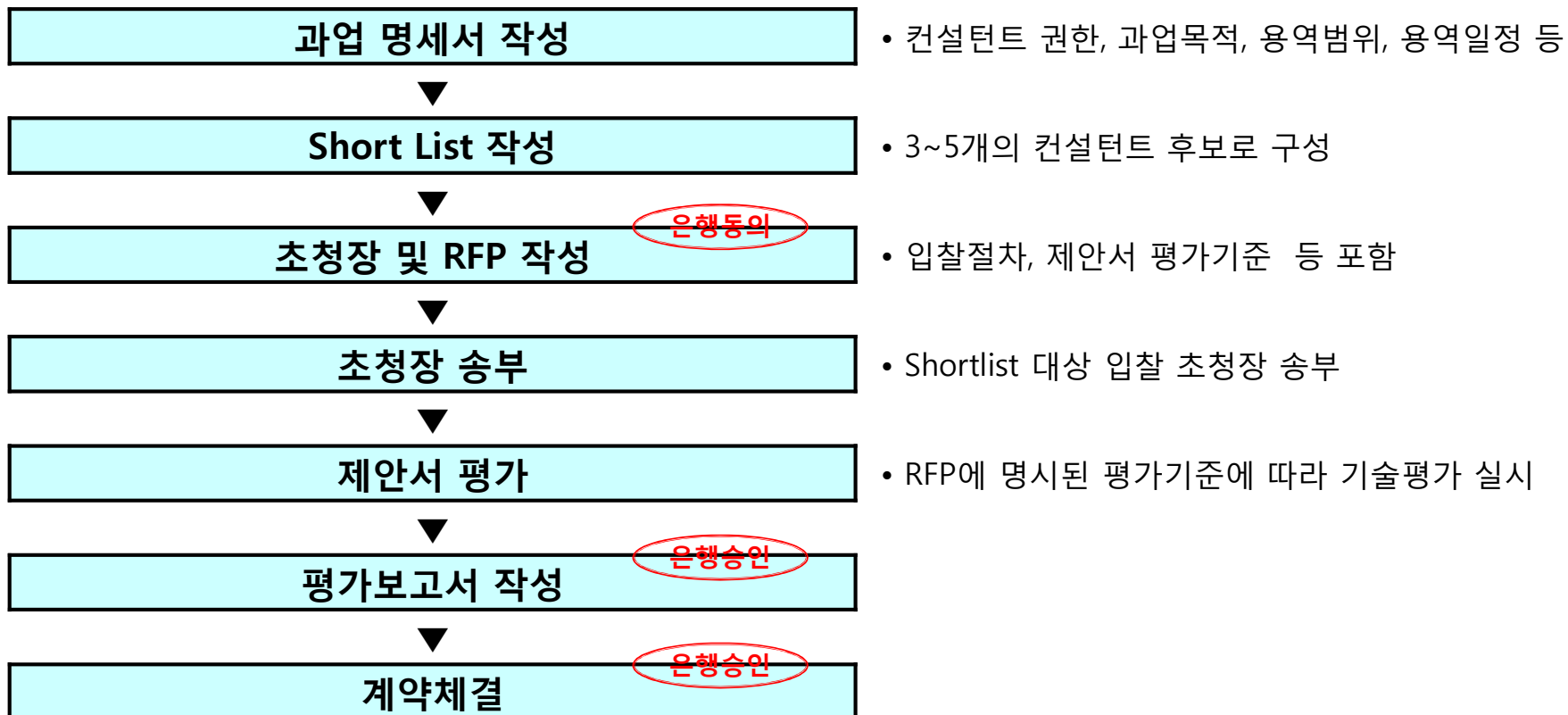
◆ 컨설턴트 고용 방법 : 아국 업체간 제한경쟁입찰 (QBS/QCBS)

3~5개의 업체로 구성된 후보자명단(Shortlist) 작성

- QBS : 기술평가 결과 1순위 후보자와 재무협상을 거쳐 고용계약 체결
- QCBS :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고용계약 체결

7. 컨설턴트 고용계약 체결(주요 입찰절차 예시)

- 사업 타당성조사(F/S)와 사업 심사가 완료된 사업으로 **수원국 정부에서 발주, 입찰절차 진행**
- EDCF 지원전략 설명회, 수원국 사업실시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정보 수집 가능



8. 시공사 선정

◆ 시공사 선정 주체

개도국 정부(사업실시기관) 책임하에 선정

(단 입찰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요 서류에 대한 EDCF 동의/승인 필요)

◆ 시공사 선정 방법

- 아국 업체간 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
- 경쟁입찰의 경우, 개도국 내 영자신문에 입찰 공고
- 사전적격심사(PQ)는 대형, 복합공사, 산업설비, ICT, 토크계약 등의 경우 필요 시 실시

8. 시공사 선정(주요 입찰절차 예시)

입찰서류 작성

- 사업실시기관 입찰서류 작성 및 은행 앞 제출 (컨설턴트 입찰서류 작성 지원)
- 은행 입찰서류 동의 (L/A (Procurement Guideline 포함) 근거 검토)

입찰 공고(Invitation for Bids)

- 차주국내 일간신문(영자신문, 1개 이상)
- 입찰공고사본 은행 송부 및 은행 홈페이지 게시

입찰제안서 접수 및 제안서 Open

- Read out : 입찰자명, 제안가격, B-Bond, 기타 주요 요구서류
(Two-Envelope: 가격제안서 별도 보관, 기술제안서평가 완료후 Open)
- Bid Opening Record : Read out 포함, 참석자 서명, 입찰자 및 은행에 송부

입찰제안서 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

- Confidentiality : 평가 및 낙찰자 선정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유출 및 입수 금지
- Clarification of Bids : 발주처는 평가를 위해 입찰자에게 제안서 관련 Clarification 요청 가능

입찰제안서 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보고서 은행 앞 제출
- 은행 평가보고서 승인 (입찰서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여부 확인)

낙찰자 선정 및 입찰평가결과 통보

- Notification of Award : 입찰평가결과를 successful Bidder와 unsuccessful Bidder들에게 통보
- Debriefing - unsuccessful Bidder는 자사의 평가결과에 대해 debriefing 요청 가능
- 발주자는 Bidder의 요청에 대한 답변을 해야함

9. 차관자금 집행 및 회수

집행방식(지출방식)

- ❖ 차관공여계약서 및 구매계약 체결 후 공급대금의 결제를 위해 차관자금지출
- ❖ 차관자금의 지출은 원화로 이루어지며 차관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의 공정이행 정도에 따라 분할 지출
- ❖ 차관자금의 지출방식은 3가지 방식으로 구분
 - ① 신용장방식 (Commitment Procedure)
 - ② 사후지급방식 (Reimbursement Procedure)
 - ③ 직접지급방식 (Direct Payment Procedure)

원리금 회수방법

- ❖ 원리금은 EDCF와 수원국간에 체결된 차관공여계약서상의 원리금상환계획 (Amortization Schedule)에 따라 회수
- ❖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6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 ❖ 이자는 차관잔액에 대하여 매 6개월마다 수취

10. EDCF 평가(목적)

평가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계획, 실행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 객관적 분석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OECD DAC)

평가

- 원조활동의 효과성을 높이하고자,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교훈습득

- 신뢰성있고 유용한 정보 제공을 통한 교훈 습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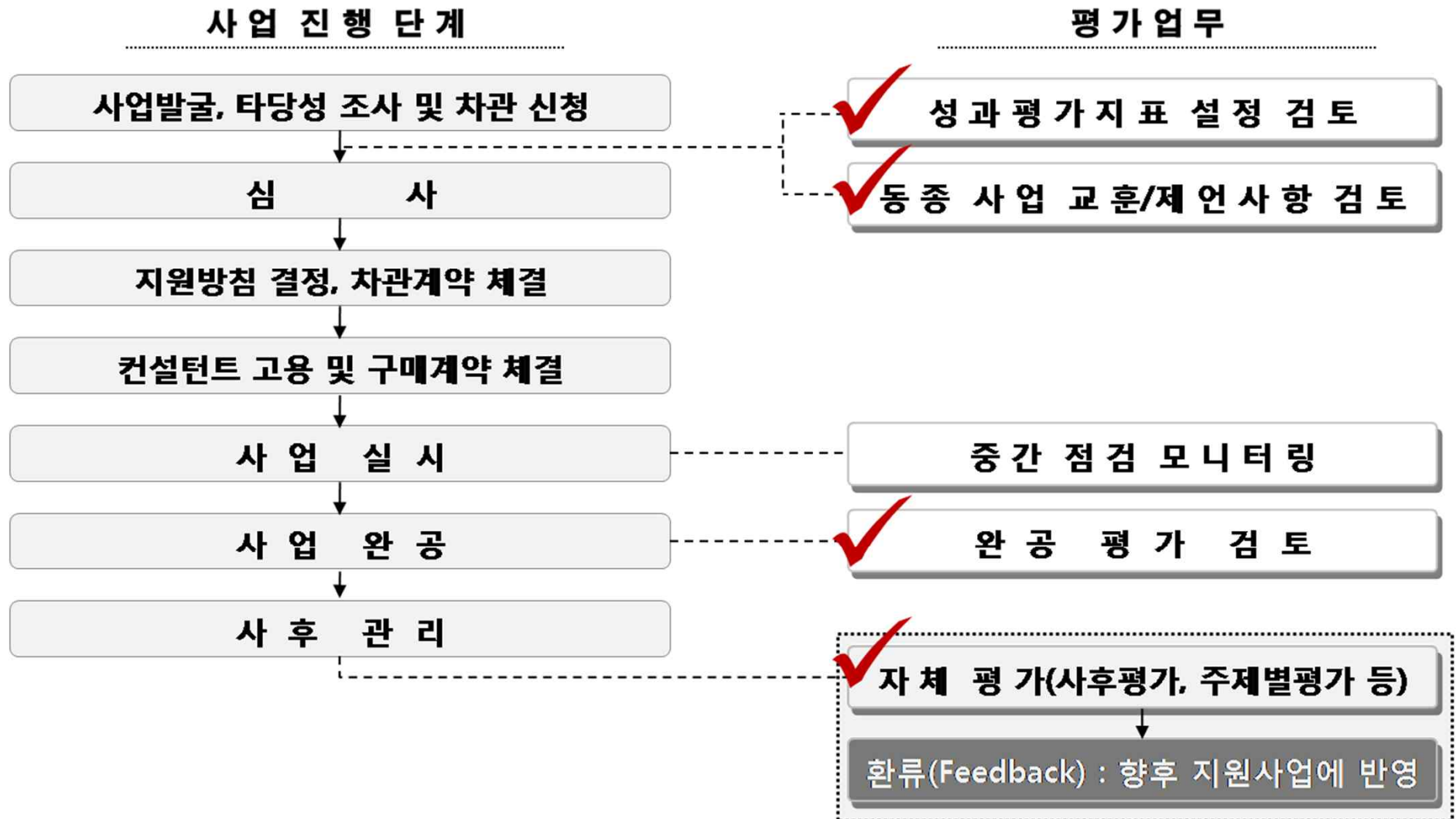


평가결과활용

- 원조활동개선에 반영
- 원조활동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이해 제고



10. EDCF 평가(사업 진행 단계별 평가 업무)



차 례

- I.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ODA 지원현황
- II. EDCF의 이해
- III. EDCF 사업 추진 절차
- IV. EDCF **인프라 분야 지원방향 및 사례**



1. 교통인프라 분야 지원현황

- ◆ EDCF는 '87년부터 '17.5월말까지 총 104건, 5,056백만달러 규모를 교통분야에 지원(승인금액 기준 38%, 승인건수 기준 28%)
- ◆ 도로, 교량, 철도, 공항, ITS, 차량구매 등

승인년도	국가	사업명	승인액(백만불)	진행단계
2013	에티오피아	모조-하와사 고속도로 건설사업	100.0	자금지출
2013	베트남	흥하교량 건설사업	117.0	자금지출
2014	미얀마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	137.83	구매계약체결
2015	필리핀	팡일만 교량건설사업	100.13	구매계약체결
2016	타슈켄트	국제공항 여객터미널 건설사업	200.0	구매계약체결
2017	스리랑카	캔디터널 건설사업	199.27	차관계약체결

2. 인프라분야 지원방향(1)

➔ 인프라 투자 활성을 견인할 다양한 차관지원 방식 활성화

일반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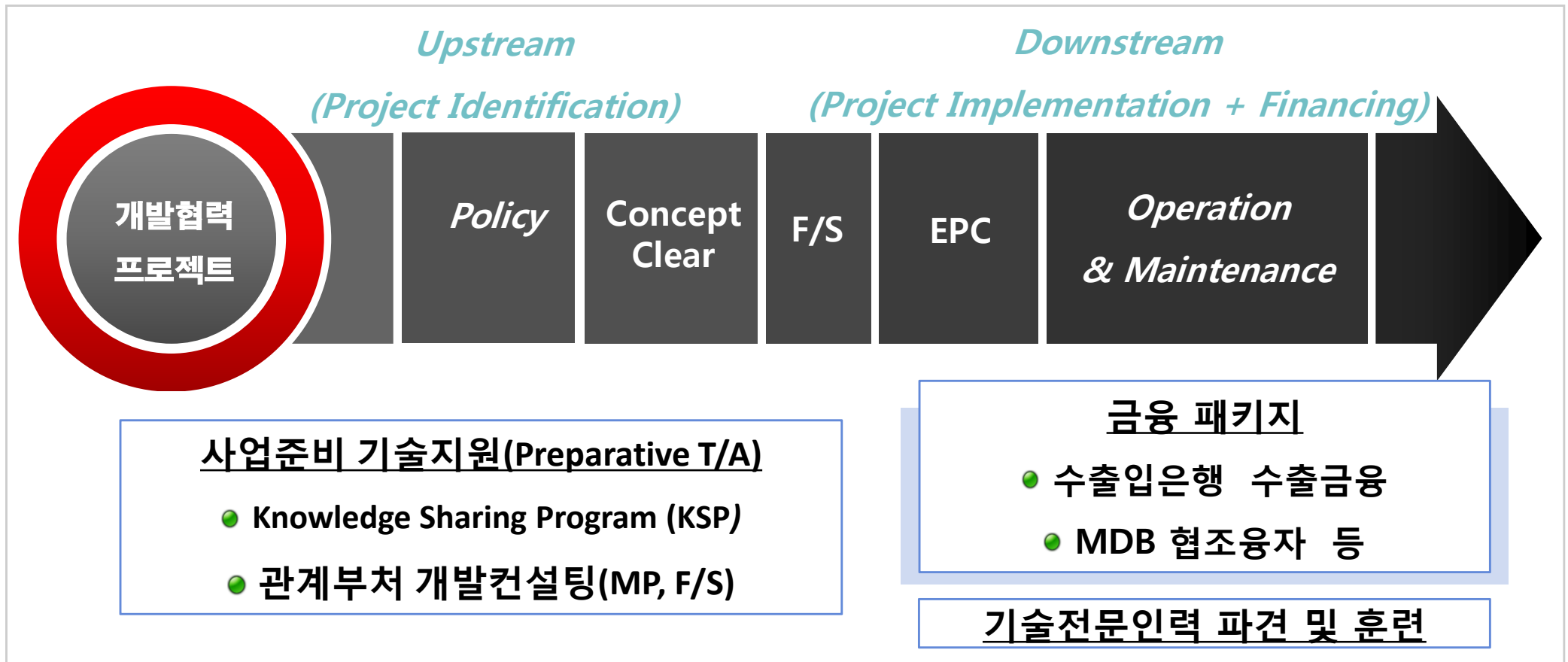
- 개발사업차관
- 기자재차관

지원방식 다양화

-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차관
- 민간협력(전대)차관
- 국제금융기구앞 차관
- 프로그램 차관(General/Sector)
- 보증, 투자 등

2. 인프라분야 지원방향(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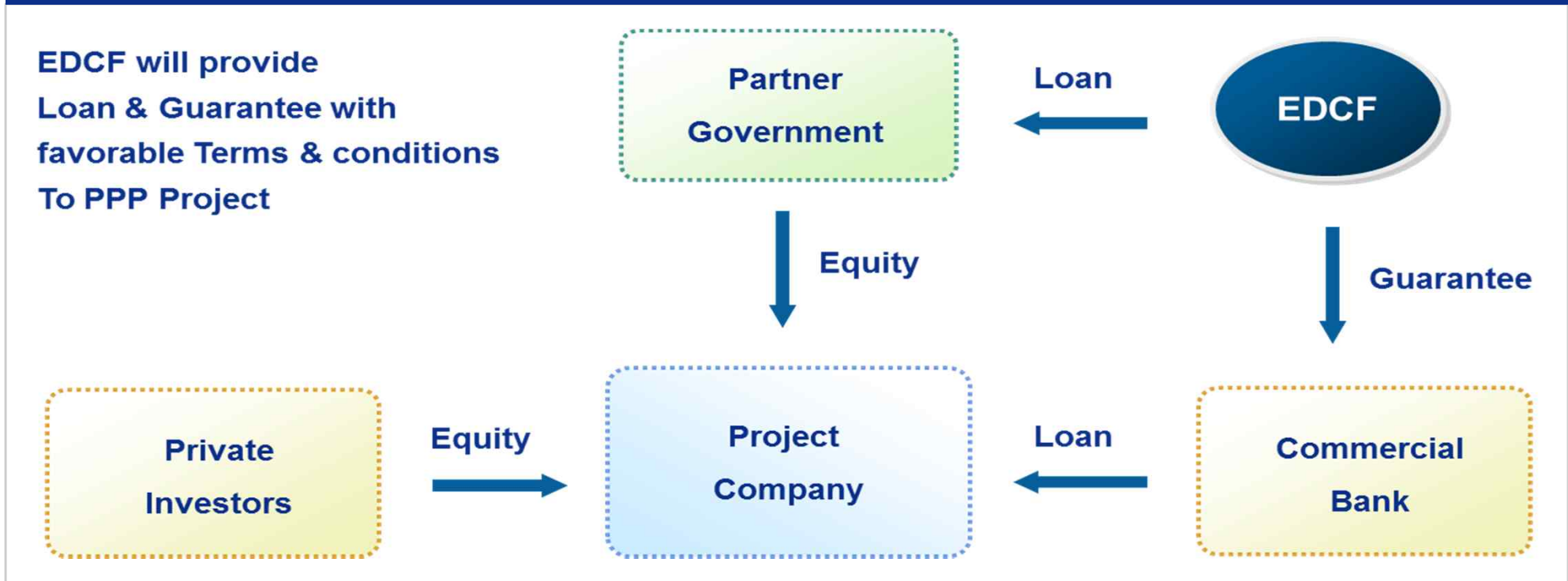
- ➔ EDCF 및 무상원조 시행기관의 무상지원 활용 극대화
 -> 다양한 금융상품의 결합을 통한 패키지 지원



2. 인프라분야 지원방향(3)

- ➔ EDCF 지원사업 대형화 추세에 따른 PPP 방식 지원 활성화 추진
 - > 민간재원 동원의 촉매제 역할 수행

민간협력차관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Loan)



3. 인프라분야 지원사례(1)

무상지원(Grant), 수출금융, 협조융자 등 결합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공항 신여객터미널 건설사업(2016)]

- ➔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
 -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 ➔ EDCF + 수은 수출금융 + UFRD
 - 333 mil U\$
 - 엔지니어링 + 터미널 구축
+ 관련 기자재 공급



3. 인프라분야 지원사례(2)

KSP, EDCF, MDB 협조융자 등 결합

[IDB –EDCF Facility : 에콰도르 송배전망 확충사업 (`16)]

- ➔ **KSP-IDB Joint Consulting**
 - Sharing Korea's Smart Grid management Tech.
- ➔ **EDCF(25 mil \$) + IDB(75 mil \$)**
 - Building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Network



[IDB –EDCF Facility : 니카라과 지열발전 사업 (`16)]

- ➔ **EDCF(25 mil \$) + IDB(51 mil \$)**
 - Geothermal Exploration and Building Transmission Network

[참고] 중소기업 관련 제도

[소액차관] 차관규모가 7백만 달러* 이하인 '소액차관사업'에 대하여 사업 참여자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여 운영

* 소액차관 사업 범위 확대(5백만불→7백만불), 124차 기금운용위 의결('17. 3. 31)

- ◆ 소액차관 이자율 : 무이자
- ◆ 구매방식 : 대한민국 적격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 방식 중 차주와 협의 결정
- ◆ 주요분야 : 소형 플랜트, 교육, 의료, IT, 환경설비 등

[금리우대] 중소·중견기업 참여 사업에 대한 금리 우대를 통해 수원국 협력 유도

- ◆ 중소기업 : 무이자
- ◆ 중견기업 : 현행 금리의 50% (단, I그룹 국가는 무이자)
- ◆ 중소기업 참여 비중이 30%이상인 컨소시엄의 경우, 이자율의 50%를 차감



Thank YOU!

김재화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
jen24@koreaexim.go.kr
T. 02-3779-6619

